

“일터에 안심, 생활에 안정,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”



근로복지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기준 적용 운영지침 안내

1. 관련: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-2577(2024.06.19.) 「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기준 적용 운영지침 시달」
2.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기준 고시가 7.3. 시행 예정으로 7.1.부터 고시 시행일 사이 노무제공에 따른 산재보험료 경감기준 적용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료 원천공제 및 월 보수액 신고시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☞ (요약)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

구분	기존 경감(고시)	추가 경감(행정 예고안)
감경직종	퀵서비스기사, 대리기사, 화물차주	퀵서비스기사, 대리기사, 화물차주
감경수준	50%	30%
적용일자	2023.7.1.~ 2024. 6.30.까지	2024.7.1.~2024.12.31.까지

붙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기준 적용 운영지침. 끝.

근로복지공단이사장

수신자 플랫폼 운영자(퀵·대리·화물), 플랫폼 이용사업자(퀵·대리·화물), 일반 사업장(퀵·대리·화물)



차장 한정은 부장 진건 06/25
김광배

협조자

일상감사 비대상
시행 부과운영부-1907 (2024.06.25.) 접수
우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(교동) / www.comwel.or.kr
전화 0527047266 전송 0505-310-3114 / jungh@comwel.or.kr / 부분공개(5)

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기준 적용 운영지침

◇ 노무제공자*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가 7. 3. 시행(예정)으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고시 시행일 전까지 행정예고안 적용 운영
*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, 화물차주 (3개 직종)

1 감경기준 적용 운영

- (플랫폼 운영자)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원천공제 및 월 보수액 신고시 행정예고안을 토대로 보험료 감경(30%) 적용하도록 전산프로그램 개선 등 안내
- (플랫폼 이용 사업자* 및 일반 사업장**) 7. 1.부터 고시 시행일 사이 노무제공에 따른 보험료 원천공제 및 월 보수액 신고시 행정 예고안을 토대로 보험료 감경(30%) 적용토록 안내

* 퀵·대리운전 업체, 운수사업자(화주) 등

**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퀵·대리운전 업체, 제조업체 등

2 지침 시행일

- (적용기간) '24. 7. 1.~고시 시행일 전까지 한시 적용

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8조의6제7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일
고용노동부장관

I.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

1. (대상 직종) 법 시행령 제56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경 대상 직종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83조의5제6호, 제9호, 제14호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한다.
2. (감경 수준) 법 시행령 제56조의11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경 수준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.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3. 적용례

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산재보험료 감경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. 또한 유효기간 도과 후 월보수액 신고서(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 서식) 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(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6 서식)가 제출된 건은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2024년 12월 노무 제공에 따른 월 보수액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56조의12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건은 동 고시를 적용한다.